「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 06. 12 (금)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9. 06.22 (월)

다. 상정일자 : 2009. 06.22 (월)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 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환경과장 남동선)

가.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노재철)

가. 본 조례안은 마하 생태관광지 일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보면,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생태주택관 등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료, 관람료 면제대상 및 관람의 제한이나 환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다. 본 마하 생태관광지내 시설현황을 보면 준공후 오랜기간 활용이 되지 않고 있거나, 시설별로 사업추진부서가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각 시설간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대안 마련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대안 제시가 필요함.
또한 시설 관람료 산정과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른 현실적인 기준에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고,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안을 검토하겠음.
○ 조례안을 보면 생태주택관에 대한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보완하도록 하겠음.

5. 심사결과 : 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부.